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94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실장 윤종장)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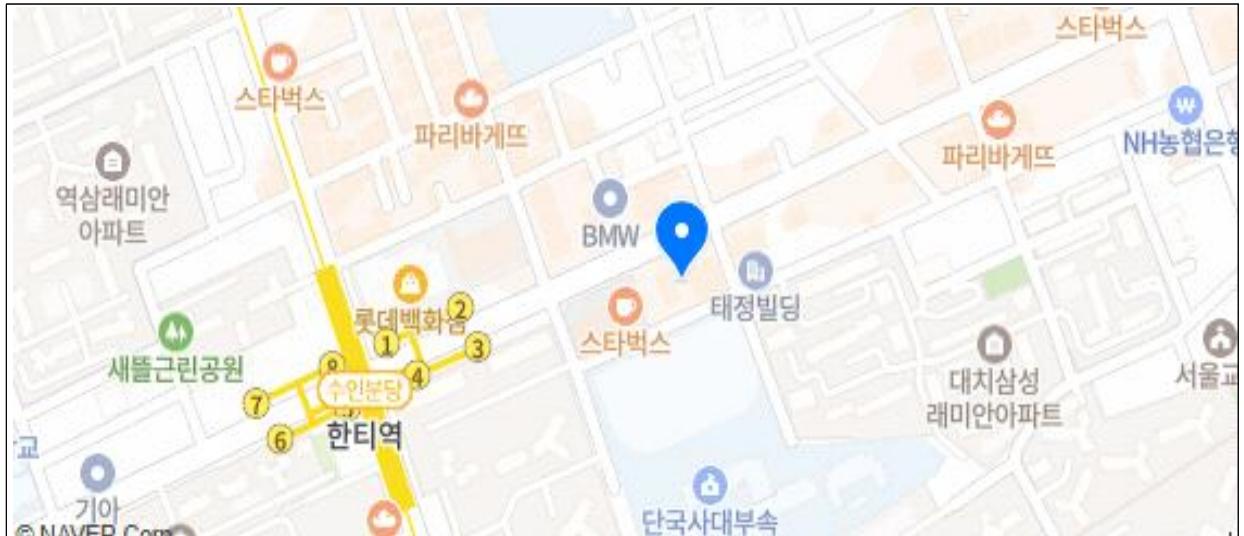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 사무로서
- 장애인의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사단법인 장애우 권리문제연구소에 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
-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담, 사법지원, 교육·홍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임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

- 소재지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 시설규모 : 151.1 m²
- 이용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1.1. ~ 2030.12.31.)

바.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아. 소요예산 : 1,133,719천원('25년 기준)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 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의3

V.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 제출 개요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절차¹⁾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본 사무는 위탁 기간의 지도·감독 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1회 후 재위탁을 추진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소재지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개관일자 : 2014.2.13.(장애인인권센터)
- 시설규모 : 151.1 m²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위탁기간 : 5년 (2026.1.1. ~ 2030.12.31.)
- 선정방식 : 재위탁
- 소요예산 : 1,133,719천원(2025년)

2 동의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

1.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현황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임.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위탁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며,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왔음. 재계약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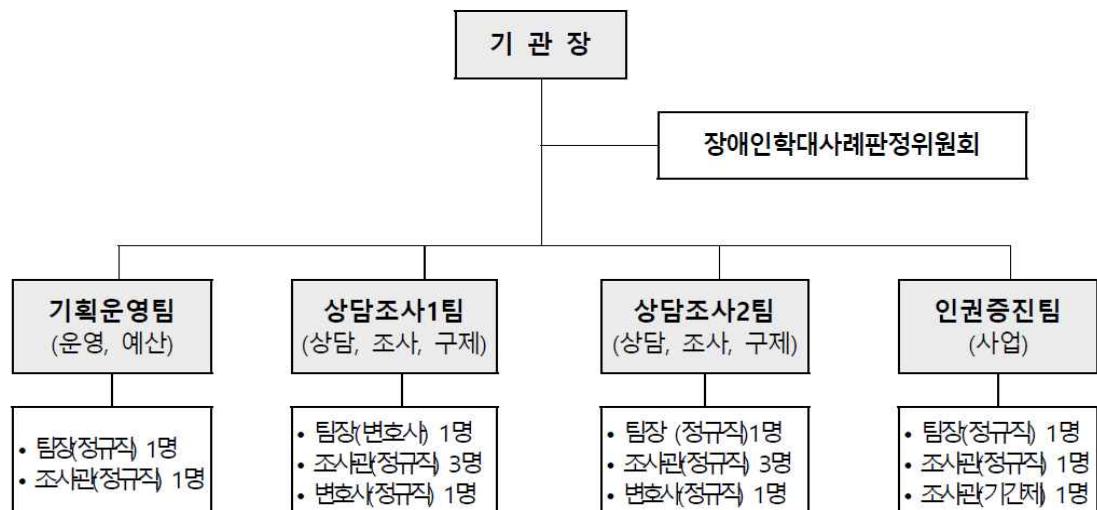
□ 민간위탁 추진 경위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차	3년 (2014.1.1.~2016.12.31.)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공개모집	
2차	3년 (2016.12.17.~2019.12.16.)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계약	
3차	3년 (2018.1.1.~2020.12.31.)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위탁	
4차	5년 (2021.1.1.~2025.12.31.)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계약	

※ 재위탁 동의안 제출한 회기(332회, '25.9월)에 보류되어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위탁기간
한시적 일시연장 추진중('26.1~3월)

□ 조직현황

○ 조직현황 : 1국 4과, 총 16명



□ 인력현황

(단위:명)

인원	기관장	팀장	변호사	조사관	기간제
16	1	3	2	9	1

□ 연도별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총액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1,179,969	민간위탁금	인건비 842,085, 운영비 70,806, 사업비 267,078
2024	1,099,215	민간위탁금	인건비 860,233, 운영비 62,610, 사업비 176,372
2025	1,133,719	민간위탁금	인건비 884,085, 운영비 54,600, 사업비 195,034
2026	1,108,593	민간위탁금	인건비 886,948, 운영비 58,348, 사업비 163,297

□ 예산 집행 현황

<2024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합 계		1,099,215	1,062,353	36,860	96.6
민간위탁금 (국비 128,834, 시비 970,381)	소계	1,099,215	1,062,353	66,860	96.6
	인건비	860,233	849,111	11,121	98.7
	운영비	62,610	49,676	12,933	79.3
	사업비	176,372	163,566	12,805	92.7

- 2024년 회계연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은 1,099,215천 원이며 이 중 1,062,353천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6%임.
 -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860,233천 원 중 849,111천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98.7%로 가장 높음. 운영비는 62,610천 원 중 49,676천 원이 집행되어 79.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사업비는 176,372천 원 중 163,566천 원이 집행되어 92.7%의 집행

률을 기록함.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025년 예산편성 세부 내역>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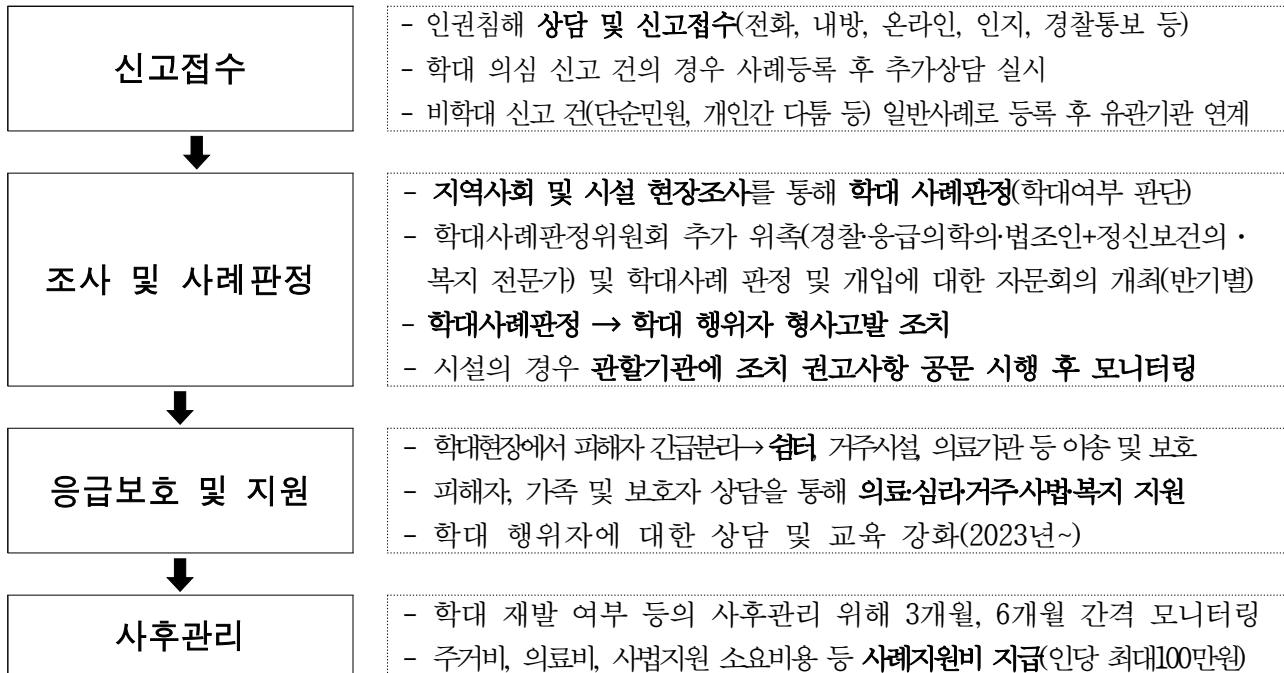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업무추진비	사 업 비
1,133,719 (100.0%)	884,085 (78.2%)	52,800 (4.5%)	4,800 (0.3%)	195,034 (16.9%)
급여	741,278	여비	13,440	업무추진비
사회보험료	75,633	공공요금	7,920	상담조사
퇴직적립금	61,774	수용비 및 수수료	10,862	홍보
기타후생경비 (복지포인트)	5,400	제세공과금	2,338	교육
		차량비	1,440	역량강화
		기타운영비	16,800	복지시설 상시모니터링
				도전행동 컨설팅

- 2025년 전체 예산 중 인건비 78.7%, 운영비 4.5%, 사업비가 16.9%를 차지함.
 - 사업비는 195,034천원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며, 복지시설 상시모니터링 115,274천원, 교육 42,606천원, 상담조사 14,874천원, 도전행동 컨설팅 9,150천원, 역량강화 6,800천원, 홍보 6,330천원 순으로 편성됨.

□ 주요 운영실적

- 사업추진 목적
 - 장애인 인권침해 신속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권익옹호에 기여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영역을 확대하여 위원회 실효성 확보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재학대 발생 방지
- 사업목표: 총 3,600건
 - 신고접수 775건, 학대(의심)현장조사 125건, 상담·지원 2,400건, 모니터링300건
- 주요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상담·조사·보호·지원·모니터링



- 학대 의심신고로 접수된 123건에 대해 현장조사 100%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학대판정(72명) 및 사법지원(341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부터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운영평가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종합성가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4.00	2.9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8.00	5.92
		사회적 가치 기여	5.00	4.02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3.50	2.53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50	4.03
개별사무	사업성과	장애인 학대조사 및 사례지원	27.00	24.52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9.00	8.28
		장애인 인식 개선 강화	9.00	8.026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3.00	2.52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6.00	5.16
사용자만족도	만족도제고노력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20.00	17.17
감점사례		협약사항위반(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합 계			100	82.91

- 2021.1월~2025.12월 기간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제6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 A~B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음. 개별사무의 사업 성과와 관련 점수가 높았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 상의 이슈로 별도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여 사용자 만족도 점수가 낮음.
 - 센터는 장애인학대 조사 후 사례회의와 학대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학대·비학대·잠재위험)하고, 피해자 안전화보, 회복 지원, 합의 및 배상명령 신청, 채무조정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한 실적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에서 시설유형별 인권지표를 세분화하고, 면담원 양성, 도전 행동 이해 교육, 응답자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정성적 조사·분석을 진행한 점이 적절하게 평가됨.
- 위탁업무 수탁기관인 (사)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조직 및 사업 등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여, 관련 경력과 전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아직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통사무의 지표가 감점됨.

- 디지털 장애인 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등 새로운 장애 학대유형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선도 역할을 담당함.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시민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역량개발이 필요함으로 평가됨.

□ 지도감독결과

일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 6.24.	- 보조금 통장 명의 예금주 변경 필요 - 변호사 호봉 책정기준 운영규정 개정에 명시 필요	조치완료
2022.12.21.	- 통장관리 및 증빙 서류 보완 필요 - 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혼용 사용 보조금 지출·집행 교육 필요	조치완료
2023. 6. 26.~27.	-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필요 - 물품관리 및 비품대장은 시 자체 매뉴얼 활용 - 인사위원회 구성 미흡 - 출장 등 복무관련 규정 준수 철저 안내 필요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예방 홍보사업 목표달성 대책 필요	조치완료
2023.12.15.	- 종사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작성 필요 - '24년 사업계획서내 안전관리계획 포함하여 제출 필요	조치완료
2024.12.27.	-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근로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음)	조치완료

- 최근 3년간 실시된 종사자·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시설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통장관리 및 증빙 서류 보완 필요,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인사위원회 구성 미흡,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등이 지적되었으나 시정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종합성과평가결과의 지도점검 이행노력에서도 기관은 협약 기간(5년) 내에 지도점검 사항이 24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회계 분야 규정 준수 물품관리 부분에 있어 지적 사항이 확인되며, 외부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적받은 건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준수 노력하여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통합 결산서 검사 결과>

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정사항: 해당없음 - 기타지적사항: 해당없음 - 권고사항: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정사항: 해당없음 - 기타지적사항: 해당없음 - 권고사항: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정사항: 해당없음 - 기타지적사항: 해당없음 - 권고사항: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3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권리 옹호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운영을 위한 사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호²⁾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함
-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및 사례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장애인을 위한 통합서비스로서, 인력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이 적합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위탁사무명	유형	현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형 재위탁	사단법인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5년 이내 ('26.01.01~'30.12.31)	적정

4 종합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사무를 연장하고 신규 또는 기존 법인에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전문성, 공공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 절감,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지속해서民間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 사무는 위탁사무를 실시하는 소재지 위치 등의 문제로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한차례(332회) 보류되었음.
- 동의안에 대한 위탁 사무는 장애인의 특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추후 수탁기관을 운영할 법인 선정 시 기관 운영관리, 조직역량, 사업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94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
- 나. 장애인의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사)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
-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133,719천원('25년 예산안 기준)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 공개모집)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담, 사법지원, 교육·홍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심현희(☎2133-7365)